거창군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관리계획('20~'24)

2020. 12.

거 창 군

부채관리관	권 해 도 (인)
담 당 자	표 주 희 (인)

Ⅰ. 기관현황

1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2실, 11과, 2직속기관, 4사업소, 1읍, 11면, 1의회
정원 730명, 현원 707명 * '19년말 기준

○ (예산) 6,039억원 * '20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6.93%, 재정자주도 51.66%

2 지방공사.공단

○ 해당없음

3 출자.출연기관

○ 출연기관 3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연기관	거창군장학회	2005	100	1	3	15	• 장학금 지급 • 원어민교사 지원 • 청소년국제화교류 사업
	거창화강석연구센터	2007	100	1	5	6	• 학술연구용역 • 국제공인시험분석기관 운영 • 거창화강석 품질관리 및 수입석 단속
	거창문화재단	2017	100	1	14	28	• 문화공연 기획 및 운영 • 거창한마당대축제 기획 및 운영 •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이자부 금융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출연기관	거창군장학회	108	2	0	15	100
	거창화강석연구센터	2	0	0	6	100
	거창문화재단	2	0	0	28	100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1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통합자산	**22,953**	**24,120**
통합부채	**379**	**368**
1. 유동부채	120	127
· 이자부금융부채	**0**	**0**
· 기타유동부채	**120**	**127**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0**	**0**
3. 기타비유동부채	260	241
통합자본	**22,574**	**23,752**

○ 거창군의 자산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1,167억원이 증가하였음.
- 유동자산(현금및단기금융상품 등) 602억원 증가
- 투자자산(장기금융상품 등) 94억원 감소
- 일반유형자산(토지, 건물 등) 106억원 증가
- 주민편의시설(체육시설, 건설중인주민편의시설) 52억원 증가
- 사회기반시설(도로,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496억원 증가

○ 거창군 부채규모는 전년대비 11억원 감소하였음.
- 유동부채(단기예수보관금 등)는 7억원 증가
- 기타비유동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 등)는 18억원이 감소

※ 현재 지방채는 0원으로 금융부채는 없음.

○ 통합자본은 통합자산에서 통합부채를 차감한 내역으로 전년대비 1,178억원이 증가하였음.

2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해당없음

3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통합자산	**22,953**	**24,120**
통합부채	**379**	**368**
1. 유동부채	120	127
· 이자부금융부채	**0**	**0**
· 기타유동부채	**120**	**127**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0**	**0**
3. 기타비유동부채	260	241
통합자본	**22,574**	**23,752**

4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0	0	0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0	0
계약상 약정	재매입약정	0	0	0	0	0
	매입확약	0	0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0	0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해당없음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 상액	내용 설명
해당없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 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내역	최근3개년 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Y-2	Y-1	Y	
해당없음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총 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해당없음							

5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9년 상환)	2년 ('20년 상환)	3년 ('21년 상환)	4년 ('22년 상환)	5년 이상 ('23년 이후 상환)
총계	**0**	**0**	**0**	**0**	**0**	**0**
지방자치단체	0	0	0	0	0	0
(내부거래)	0	0	0	0	0	0
지방공사·공단	0	0	0	0	0	0
(내부거래)	0	0	0	0	0	0
출자·출연기관	0	0	0	0	0	0
(내부거래)	0	0	0	0	0	0
비율	0	0	0	0	0	0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18년말 잔액*	발행 유형	금리	만기	발행 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해당없음									

6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거창군

○ 2014년 지방채 잔액 전액을 상환하여 금융부채가 0%로 채무 제로화를 달성, 지속적으로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자산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1,167억원이 증가하고 부채규모도 전년 대비 11억원 감소하였으며, 단기예수보관금 등 유동부채는 증가하였으나,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기타비유동부채가 감소하여 전년 대비 재무건전성 향상됨

② 출자·출연기관

○ 지난해 2.0억원에서 1.5억원으로 0.5억원이 감소하여 부채의 축소를 위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함.

7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해당없음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해당없음				

III. '20~'24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1 '20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20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9년 현황				'20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368	366	0	2	368	366	0	2
1. 유동부채*	127	125	0	2	127	125	0	2
· 이자부금융부채	0	0	0	0	0	0	0	0
· 기타유동부채**	127	125	0	2	127	125	0	2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0	0	0	0	0	0	0	0
3. 기타비유동부채***	241	241	0	0	241	241	0	0

* 1년 이내 갚아야할 부채,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미지급이자, 미지급금, 선수금, 미지급비용, 유동성장기부채 등

** 1년 이후 만기 도래 차입금

***장기매입채무(1년이상 매입채무, 외상, 어음 등),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9년 현황				'20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368	366	0	2	368	366	0	2
1. 유동부채	127	125	0	2	127	125	0	2
· 이자부금융부채	0	0	0	0	0	0	0	0
· 기타유동부채	127	125	0	2	127	125	0	2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0	0	0	0	0	0	0	0
3. 기타비유동부채	241	241	0	0	241	241	0	0

나. 우발부채 : 해당없음

2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20~'24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총계(①+②+③)	0	0	0	0	0	0
① 거창군	0	0	0	0	0	0
② 거창군장학회	0	0	0	0	0	0
③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0	0	0	0	0	0
④ 거창문화재단	0	0	0	0	0	0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총계(①+②+③)	0	0	0	0	0	0
① 거창군	0	0	0	0	0	0
② 거창군장학회	0	0	0	0	0	0
③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0	0	0	0	0	0
④ 거창문화재단	0	0	0	0	0	0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총계(①+②+③)	0	0	0	0	0	0
① 거창군	0	0	0	0	0	0
② 거창군장학회	0	0	0	0	0	0
③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0	0	0	0	0	0
④ 거창문화재단	0	0	0	0	0	0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①-②)	△10	△10	△10	△10	△10
① 증가 소계	0	0	0	0	0
1. 유동부채	0	0	0	0	0
· 이자부금융부채	0	0	0	0	0
· 기타유동부채	0	0	0	0	0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0	0	0	0	0
② 감소 소계	△10	△10	△10	△10	△10
3. 기타비유동부채	△10	△10	△10	△10	△10

○ 현재 채무액은 0원으로 금융 유동부채가 없는 건전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재무건전성 개선 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지방채 발행업의 신중한 검토로 지방채 제로화 지속 추진
- 미수세금과 미수세외수입금 등 수입증가 노력을 통한 건전성 강화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3 우발부채('20~'24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 해당없음

나. 자치단체 : 해당없음

다. 공사·공단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붙임 2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